

제1지역
평등고용기회(EEO) 사무소
1656 Union Street
Eureka, CA 95501
(707) 441-5814

제2지역
EEO 사무소
1657 Riverside Drive
Redding, CA 96001
(530) 225-3055

제3지역
EEO 사무소
703 B Street
Marysville, CA 95901
(530) 741-7130

제4지역
EEO 사무소
111 Grand Avenue
Oakland, CA 94612
(510) 286-5871

제5지역
EEO 사무소
50 Higuera Street
San Luis Obispo, CA
93401
(805) 549-3037

제6지역
EEO 사무소
1352 West Olive Avenue
Fresno, CA 93728
(559) 444-2522

제7지역
EEO 사무소
100 S. Main Street
Los Angeles, CA 90012
(213) 897-0797

제8지역
EEO 사무소
464 West 4th Street
San Bernardino, CA 92401
(909) 383-4229

제9지역
평EEO 사무소
500 S. Main Street
Bishop, CA 93514
(760) 872-0752

제10지역
EEO 사무소
1976 East Dr. Martin
Luther King Jr. Blvd.
Stockton, CA 95205
(209) 948-3911

제11지역
EEO 사무소
4050 Taylor Street
San Diego, CA 92110
(619) 688-4249

제12지역
EEO 사무소
1750 East 4th Street,
Suite 100
Santa Ana, CA 92705
(657) 328-6596

본부

민권법 제6장 담당관
1823 14th Street
Sacramento, CA 95811
(916) 324-8379

**이 간행물은
다음과 같은
여러 다른 형태로도
제공될 것입니다.**

점자
큰 활자본
컴퓨터 디스크
음성 파일 또는
다른 언어로 된 인쇄물을
원하시면 가주 교통부
비즈니스 및 경제 기회국
(916) 324-8379
711 (TTY) 전화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주 교통부 그리고 귀하

민권법 제6장이 보장하는 귀하의 권리 및 관련 법규

이 안내서는 1964년 제정 민권법 제6장에 명시된 필요조건 및 그 필요조건이 보장하는 귀하의 권리를 알려드리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April 2019
Korean



민권법 제6장이란?

제6장(Title VI)은 1964년 제정 미국 민권법의 법령 조항입니다.

1964년 제정 미국 민권법 제6장(60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미국민도, 인종, 피부색, 또는 국적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여하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서 제외되거나, 그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미국연방법전 42제목 21장 5조 2000d항)

이어서, 소수민족 및 저소득층의 환경적 정의를 다루도록 1994년에 제정된 연방법인 행정명령 12898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각 연방정부기관은 자체 프로그램, 정책, 활동으로 인해 소수민족 및 저소득층에 가해지는 과도하고 역기능적인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적절히 파악하고 인정함으로써 환경적 정의를 달성하는 것을 그 임무의 일환으로 삼는다.”

연방정부로부터 재정보조를 수령하는 프로그램이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통해 보호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주 교통부(Caltrans)는 캘트랜스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혜택을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장애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가주 교통부는 캘트랜스 직원이나 연방기금 수령자에 의한 차별대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인 바 시, 카운티, 계약업자, 컨설턴트, 공급업체, 대학교, 대학, 계획 대행업자, 기타 연방보조 고속도로 기금 수령자 등이 후자에 해당됩니다.

가주 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모든 차별적 관행을 금지합니다.

- 차별을 안 했더라면 수령 자격이 있었을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재정 지원, 또는 혜택을 개인에게 거부함.
- 참여하는 데 다른 기준 또는 요구사항을 적용함
- 프로그램의 어느 부분에서든 인종차별 내지 별도로 취급함
- 혜택이 제공되는 품질, 수량, 또는 방법에서 구별됨
-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연방기금으로 지은 시설에서 실시되는 여하한 활동에서 차별함.

민권법 제6장, 관련 법령 및 환경적 정의에 대한 대통령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주 교통부는 다음과 같이 할 것입니다.

- 소수민족 및 저소득층에 대한 해로운 보건상, 환경상의 영향을 피하거나 줄임.
-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모든 커뮤니티가 교통정책 결정 과정에 반드시 온전하고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함.
- 소수민족 및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거부되거나, 감축되거나, 그 수령이 중대하게 지체되지 않도록 함.

그 외에, 대도시권계획기구(MPO), 도시 및 카운티를 포함하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받는 모든 수령자는 자체 프로그램 및 활동을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장애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혜택 및 서비스

가주 교통부의 임무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각종 수송수단을 통합한 교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캘트랜스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장애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전체 캘리포니아 주민의 교통수단에 대한 필요성 충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습니까?

만일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또는 장애로 인해 차별을 당했다고 믿으신다면 가주 교통부 평등고용기회(EEO) 사무소에 서면으로 불만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EEO 사무소는 가주 전역에 산재하며 그 주소 및 전화번호는 이 안내서의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민권법 제6장 관련 불만신고는 캘트랜스 비즈니스 및 경제기획국의 민권법 제6장 프로그램에서 조사하도록 새크라멘토로 전송됩니다.

민권법 제6장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주 교통부의 전 직원 및 기능성 프로그램, 캘트랜스 비즈니스 및 경제기획국의 민권법 제6장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리더십, 지도,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민권법 제6장과 환경적 정의에 대한 대통령령이 계속해서 준수되도록 합니다.